

##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제도적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임진택<sup>1</sup> · 이상룡<sup>1</sup>

<sup>1</sup>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 A Study o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Jin-Taek Im<sup>1</sup>, Sang-Ryong Lee<sup>1</sup>

<sup>1</sup>Dep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osuk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We proposed fundamental rules of prospective on legal and institutional position and role of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Methods** : B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grade and allowance given to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were different every self-governing body.

**Results** :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 can't serve as a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that the "The Enforcement Regulation abou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the Standard of Fixed Number of person of Self-Governing Body(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prescribes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 5th grade is regulated within 7% among the number of regular order officials. But not appointing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 5th grade infringes on the Constitution, the highest law. The reason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t be appointed to office as the regular order officials by the self-governing body is that "The Enforcement Order of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시행령)" prescribes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re not indispensable to Public Health Center. But in fac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can execute many kinds of work such as medical examination or instructing house nursing.

**Conclusion** : The Korean Medicine Doctors working at Public Health Center serve at low positions as daily use or common use, not receiving a regular order. All laws including the Constitution(헌법), the Medical Services Law(의료법), the Law of Preservation of good health of Local Area(지역보건법),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국가공무원법), the Local Public Service Law(지방공무원법) and the Law of Higher Education Law(고등교육법) describe that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nd the Western Medicine Doctors are equal to their position and right.

**Key words** : public health center, Korean Medicine Doctor, Medical Services Law

· 교신저자 : 이상룡 전북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우석대학교 한의과  
대학 경혈학교실, Tel. 063-290-1563 Fax. 063-290-1558,  
E-mail : lisr@woosuk.ac.kr

## I. 서론

전국 243개 보건소와 1271개 보건지소, 그리고 1911개 보건진료소<sup>1)</sup> 가운데 56곳의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5개 보건소만이 한의사를 정규 사무관의 직급으로 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 일용직 또는 상용직 등으로 임용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는가 하는 문제를 밝혀보고자 하는 내용이 본 논문의 주된 내용이다. 같은 수업연한<sup>2)</sup>을 거치며 또 동등한 복지부 면허의 자격을 가졌으면서도 양의사와는 사뭇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된다.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가운데 법의 규정과 시행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공무원 임용시 직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공무원정현원명부”에 “정원”상 한의사의 직급을 “보건주사”로 규정한 곳이 많았음은 물론 심지어는 규정하지도 않은 지역이 있었다. “정원”상 양의사의 직급을 “의무사무관”으로 규정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한방 병, 의원의 연간 의료비 총액이 1조 7,550억원<sup>3)</sup>으로 총 의료비의 10.8%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져가고, 또 한의학 발전을 위한 많은 법,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어 국민의

료의 중요 영역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도적 불합리, 법·제도의 편향된 적용으로 인하여 한의학은 발전에 많은 장애를 받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한방 의료의 혜택을 입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많은 불편을 입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보건법상 한의사는 보건소에 필수 배치 인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임의로 한방진료실을 설치하여 한방 진료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직급이나 급여, 그리고 진료실의 장비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정형화된 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공 의료기관의 최일선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한의사<sup>4)</sup>의 지위와 역할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조명해 보고, 설문을 통한 실태조사로 작금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논해보고자 한다.

## II. 본론

### 1.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 제도적 지위

#### 1) 한의사 자격의 취득

한의사의 면허 취득에 관하여는 의사, 치과의사와 더불어 의료법 제 5조<sup>5)</sup>에 “국내의 의학, 치과의학,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

1) 保健福祉 主要行政統計, 보건복지부, 1999, p.13

2)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3) 정영호, 강성호, 1996년 의료기관별 국민의료비 추계와 지출구조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대한예방의학회지 2000년 6월호 재인용)

4) 이 논문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다.

5) 의료법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2·1·13]]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고 각각의 학사학위를 받은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0년 1월 12일에 단서를 삭제하여 외국에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재 한시적으로만 동 5조를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중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 취득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는 1999년의 대법원 특별판례가 있다<sup>6)</sup>.

## 2.) 한의사의 법, 제도적 지위

우선, 한의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일체의 자연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sup>7)</sup>에 따른 “직업결정의 자유”로 한의사라는 직업을 획득하였으며, 또한 동시에 공적으로는 고등교육법상 요구되는 교육과정<sup>8)</sup>을 이수한 후, 의료법에서 요구하는 국가시험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sup>9)</sup>를 받은 사람이다.

한의사는 주로 보건 및 의료상의 업무를 담당하는데, 의료법에서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sup>10)</sup>”로 하는 의료인의 지위에 있으며, 사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도 있고 공

### 6) 1999년 특별판례

○ 한국에서 통신교육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천진중의학원을 졸업하고 하북의과대학 중의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사건번호 : 98두11007

사건일자 : 1999.9.21.

요 지 : 한국에서 통신교육방법으로 3년제인 중국 천진중의학원을 졸업하고 하북의과대학중학부 4학년에 편입하여 2년 만에 졸업한 뒤 중의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한의사 국가시험응시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국내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구의료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호,

7)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1, pp.527~534,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로서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직업이탈의 자유, 결직의 자유 그리고 경쟁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8)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 (수업연한)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교육과정은 예과를 각각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으로 한다.

9) 의료법 제9조 (국가시험)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국가시험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87·11·28, 97·12·13 법5454]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신설 94·1·7, 97·12·13 법5454]

④ 제1항의 국가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제11조 (면허의 조건 및 등록)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할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료인의 종별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10) 의료법 제2조 (의료인)

적인 직업인 공무원으로서 봉직할 수도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는 특별히 한 의사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는 바가 없다. 다만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라는 포괄적 적용의 “평등 원칙” 조항<sup>11)</sup>이 있을 뿐이다.

제도적으로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3]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99.3.27.개정)”에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에 의사와 한의사를 공히 5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지방공무원임용령 2조 4호 및 3조 1호에 의한 “지방공무원임용령[별

표1]<sup>12)</sup>에 한의사를 “보건의무”의 직군의 “의무” 직렬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同 별표에 의하면 의무직은 의무사무관인 5급부터 그 이상의 직급만 존재하고, 6급 이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파악한 바로는 전국의 243개 보건소 가운데 56명의 한의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5명만이 5급인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약직이나 일용직, 또는 상용직, 비전임계약직 등 다양한 직급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것은 “현원”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공무원정원명부<sup>13)</sup>상 “정원”으로 규정된 직급이 중요한데,

-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86·5·10, 87·11·28, 97·12·13 법5454]
- ②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개정 81·12·31, 86·5·10, 87·11·28]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중사함을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지도에 중사함을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중사함을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에 중사함을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상병자 또는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중사함을 임무로 한다.

11)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3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의 일부]

1급 내지 9급공무원직급표(제2조 제4호 및 제3조 제1항 관련)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보건의무	보건	보건	지방관리관	지방보건이사관	지방보건부이사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보건주사	지방보건주사보	지방보건서기	지방보건서기보	
	식품위생	식품위생				지방식품위생서기관	지방식품위생사무관	지방식품위생주사	지방식품위생주사보	지방식품위생서기	지방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료기술				지방의료기술서기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의료기술주사	지방의료기술주사보	지방의료기술서기	지방의료기술	
	의무	일반의무 치무		지방의무이사관	지방의무부이사관	지방의무서기관	지방의무사무관					
	약무	약무 약제		지방약무이사관	지방약무부이사관	지방약무서기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약무주사	지방약무주사보			
	간호	간호		지방간호이사관	지방간호부이사관	지방간호서기관	지방간호사무관	지방간호주사	지방간호주사보	지방간호서기		

13) 지방자치단체 총무과에 비치됨.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직급의 기준을 삼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다섯 개 자치단체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무관의 직급을 한의사의 “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의무사무관”을 최하위의 직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기고 있는 셈이 된다.

## 2. 한의사의 법, 제도상의 역할

한의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은 우선 의료법 제 2조<sup>14)</sup> ②항에 “의료인은 그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확보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한다. .... 3.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한의사에 대한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는 개인 한방 병·의원뿐만 아니라, 일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부터 보건지소, 보건복지부, 그리고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공인의 신분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주로 보건소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는데, 보건소에서의 한의사의 업무는 전적으로 진료에 국한되어 있다. 소내 진료와 외부 진료인 순회진료가 대부분의 업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간혹 보건소의 계획에 따라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1년에 1회 정도의 교육이기 때문에 주 업무라

고 할 수는 없다.

실태조사에 응한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에 의하면 많은 수가 한의사는 직급이 주어지지 않아서 제 위치가 없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역할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현 제도 하에서 양의사가 5급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진료 뿐 아니라 그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며, 기회가 주어지면 승진도 하고 또 보건소장<sup>15)</sup>의 직위에도 임용될 수 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사항이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업무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한의사가 진료 이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에 가정간호에 대한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설문조사에서, 한의사가 2인 이상으로 인력의 여유가 있을 때 진료 이외에 가장 우선 실시했으면 하는 업무로 “고령, 독거노인의 방문진료”를 선택하였는데 이것은 한의사의 업무가 진료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응답이다. 그리고 기타 많은 보건소 근무 한의사가 “생활보호환자의 무료 방문진료”도 한의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은 한의사가 시행해야 할 업무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 3. 한의사와 관련된 법, 제도적 문제의 개

14) 각주 10)참조

1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별표1]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 기준(제3조 제1항 관련)  
광역시·도의 경우,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15만 명 이상이면 보건소장은 4급 서기관의 직위를 받고, 15만 명 이하이면 5급 사무관의 직위를 받는다.  
사업소의 장 및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구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과장급 담당관	계장
서울특별시	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사업소	3급 내지 5급		4급	5급	6급
광역시, 도	본부	2급 내지 3급		4급	5급	6급
	기타 사업소	4급 내지 6급			5급	6급
시, 군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4급 내지 6급			5급	6급
	인구 15만 미만	5급 또는 6급				6급

**선방향**

**1) 등·서의학 전공자의 법적 평등성**

**(1)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구분과 계약직 공무원**

우선 공무원에는 어떠한 구분이 존재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크게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sup>16)</sup>된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그리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정

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고용직공무원"이 있다.

이 계약직공무원은 특별히 한의사와 관련이 많은데, 그것은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의 대부분이 이 계약직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모두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암시하듯이 첫째는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임용되어 근무하며, 둘째는 해임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등<sup>17)</sup> 여러 가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

**16) 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0]
  - 1. 일반직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2. 특정직공무원 : 공립의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5·31, 94·12·22, 97·12·13, 98·9·19]
  - 1. 정무직공무원
    -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 가. 비서관·비서
    - 나. [삭제]
    -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82·12·28, 98·9·19]
 [전문개정 81·4·20]

**17)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2) 법령에 나타난 의사와 한의사의 평등성

헌법 제11조<sup>18)</sup>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 시민혁명 이후 인간의 정신세계와 국가적 생활을 지배하는 2대 이념으로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그리고 기본권 보장에 관한 최고의 헌법이론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민주국가의 법질서를 구성하는 요소이며 입법, 집행, 사법 등 모든 공권력 발동의 기준이 된다. 또한 평등의 원칙은 최고의 헌법원리이기 때문에 헌법개정에도 의해서도 폐지할 수 없는 개정금지사항이다.

이러한 평등의 원리는 세계인권선언과 대부분의 헌법이 이를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개념으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

원칙을 말하며 그의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차의의 금지”이다. 이 평등의 원칙은 동일한 것은 평등하게, 상이한 것은 불평등하게 다루므로써 사회정의의 실현하려는 원리이며,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그리고 평등권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 공권까지를 말하며, 이러한 평등권에는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20)</sup>.

헌법에서 규정한 평등권은 의료인에 있어서

5.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직위의 해제)
    -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3·3·12, 82·12·28, 91·5·31, 94·12·22]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삭제 [81·4·20]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66·4·30]
    -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개정 93·12·27]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81·4·20, 91·5·31]
    -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 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81·4·20]
  - 18) 헌법 제11조
    -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19)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1, pp.366~367.
  - 20)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1, pp.371~372
- 평등권의 내용
1. 평등권은 실정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인간이 자연적 상태에서부터 누려온 생래적, 천부적 권리이다 (전국가적 자연권).

“고등교육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sup>21)</sup>” 및 “지방공무원법<sup>22)</sup>”에서도 그대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임용및시험시행규칙[별표3]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분표(99.3.27.개정)”에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에 의사와 한의사를 공히 5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모든 법령에서 의사와 한의사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의사나 한의사가 의무사무관인가, 보건주사 직인가, 계약직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약직<sup>23)</sup>은 일정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과는 신분상 뚜렷한 차이<sup>24)</sup>가 발생한다. 거기에다 계약직의 직책은 “가, 나, 다, 라, 마”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전문의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계약직 가급”을, 그렇지 않은 자는 “계약직 나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한방전문의의 시행 이전에 이러한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한의사로서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계약직 가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보건소 근무 한의사들은 같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2.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아니함은 물론 평등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이다(주관적 공권).
3. 평등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을 균등하게 실현하기 위한 기능 내지 방편으로서 기본권 전반에 공통으로 작용되어야 할 기능적, 수단적 권리이다(기능적, 수단적 권리).
4. 평등권은 국가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면서 또한 적극적으로 평등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다(양면적 권리).
5. 평등권은 개인을 위한 주관적 공권인 동시에 민주적인 국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객관적 법질서).

21) 국가공무원법 제35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2) 지방공무원법 제33조 (평등의 원칙)

공개경쟁에 의한 임용시험은 동일한 자격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시험의 시기 및 장소는 응시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3) 각주 17)참조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5·31, 94·12·22, 97·12·13, 98·9·19]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가. 비서관·비서  
나. [삭제]

다. 기타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82·12·28, 98·9·19] [전문 개정 81·4·20]

24)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6조 (채용기간)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98·10·1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5·7·1]



전문의의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 직급을 주고,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의료인으로서 의사와 한의사는 공직에 근무하는 형태에 따라 여러 직급을 받을 수 있는데, 보건주사직이나 계약직의 직급을 받는 한 많은 제한 요소가 수반된다. 예를 들면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자격에도 의무직과 기타직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sup>25)</sup>, 계약직인 공무원이 보건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에 의하면 의사와 한의사는 공히 일반의무의 직책을 가지며 그에 해당하는 직급은 5급 사무관으로부터 시작하여 4급 서기관, 3급 부이사관, 2급 이사관에 이르도록 되어있다. 의무직인 경우는 처음부터 주사의 직급으로 임용될 수가 없는 것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사를 "보건주사"의 직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 2) 한의사와 관련된 법, 제도적 문제의 개선

### (1) 관련 법령에서의 평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모든 법령에서 한의사의 자격과 지위를 양의사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그 내용의 일부를 열거해 본다.

1.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의 [별표 3] 일반직공무원의 가점대상자격증구분표(99.7.3. 개정)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공히 "의무" 직렬의 5급 위치에 두고 있다.
2.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1 조의 4(의사 등의 전염병 발생신고)<sup>26)</sup>"에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신고서를 전염병환자 등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2 조의 4(제1군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0·1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 25)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보건소장)

- ①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 26)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 1 조의 4(의사 등의 전염병 발생신고)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환자·전염병의사환자 또는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전염병환자 등"이라 한다)를 진단하였거나 그 시체를 검안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전염병환자 등 또는 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보건원장이 지역별로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 "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표본감시전염병(이하 "표본감시전염병"이라 한다)의 발생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00.10.5. 신설)

- 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사망 등의 신고)”에 “의사 또는 한의사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군전염병환자 등이나 제2군전염병 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일본뇌염의사환자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0.10.5.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4. “전염병예방법 제 6 조(전염병환자 등의 변경신고)”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 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99.12.31. 개정)”의 “5.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서 시설장의 자격기준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 장애관련분야에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다.
  6. 의료법시행규칙<sup>27)</sup>에서 사망 진단 시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와 한의사의 서명이 들어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의료법 제55조(전문의)<sup>28)</sup>”에 한의사도 수련을 거쳐 전문의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8.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 3] 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98.9.4. 개정)”에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에 시설장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9. “식품위생법 제67조 [식중독에 관한 조사보고]”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중독을 일으킨 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고 규정하고 있다.
  10.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 5(보상심의위원회)<sup>29)</sup>”에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

27)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2000.10.21. 개정)

28) 의료법 제55조(전문의)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97.12.13. 개정)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73.2.16. 개정)
- ③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1.12.31. 개정)
- ④ 삭제 (81.12.31.)

29) 병역법시행령 제153조의 5(보상심의위원회)

- ①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한다. (96.12.31. 신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96.12.31. 신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96.12.31. 신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96.12.31. 신설)
-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6.12.31. 신설)
- ⑥ 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96.12.31. 신설)
-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6.12.31. 신설)

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 하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하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96.12.31. 신설)"고 규정하고 있다.

11. "병역법 제34조 [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sup>30)</sup>에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공중보건의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장교 등의 병적편입)<sup>31)</sup>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00.12.26. 개정)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의 "7.가정간호<sup>32)</sup>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96.12.31. 신설)

30) 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①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원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99.2.5.개정)

1.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중 그 편입이 되지 아니한 사람
2. 제5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의무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99.2.5. 개정)
3.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4.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 보충역인 사람 (2000.12.26.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중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친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99.2.5.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되, 그 교육소집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9.2.5. 개정)

④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의 편입·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2.5. 개정)

31) 병역법 제58조(의무·법무·군종장교 등의 병적편입)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의무·법무 또는 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93.12.31. 개정)

1.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000.12.26. 개정)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신부 또는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사람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한 사람은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으며, 그 편입대상 및 제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2.5. 개정)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해당 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3. 목사·신부 또는 승려의 자격을 얻기 위하여 신학대학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별표 4]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99.3.27. 개정)”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동등하게 “보건” 직렬의 “의학” 직류로 구분하고 있다.
15. “공무원임용 및 시험시행규칙 [별표 3] 채용시험·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표(99.3.27.개정)”에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에 의사와 한의사를 공히 5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의사와 사무관

전체 공무원 수에 대한 각 직급별 비율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인구수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광역시의 자치구는 정규직 공무원의 7% 이내로 사무관을 임용할 수 있다<sup>33)</sup>. 한의사가 의무사무관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한방진료실은 설치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다른 업무분과가 위치를 확고히 한 후이므로 동결된 사무관의 자리를 새로 설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한의사에게 사무관의 직위를 하나 설정해 주면 다른 사무관이 그의 직위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이 개정되든지, 아니면 복지부령으로 보건소의 직위를 별개로 설정해 주든지 혹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한의사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으면 한의사는 보건소에 정규직으로 존재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될 것이며, 더 심각하게 되는 경우는 한의사를 임용하지 않을 것이다. 한의사를 위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때문에 사무관으로도 임용할 수 없고, 또 “지방공무원임용령[별표1]” 때문에 보건주사 이하의 직급으로도 임용할 수 없는 기이한 상황에 봉착하여 임시미봉책으로 한의사를 계약직이나 일용직으로 임용하는 것이므로, 즉시 상기의 규칙을 개정하여 한의사도 의사와 마찬가지로 사무관의 직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32)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 제1항 관련)

7. 가정간호

가정간호는 진료상 퇴원 후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 가정전문간호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33)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별표 5]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정원책정기준 (97.2.4. 개정)(부분)

일반직공무원

가. 특별시·광역시·도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특별시	5% 이내	14% 이내	30% 이내	34% 이내	17% 이내
광역시	5% 이내	14% 이내	28% 이내	34% 이내	19% 이내
도	6% 이내	18% 이내	29% 이내	34% 이내	13% 이내

나. 시·군·자치구

구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시	1% 이내	7% 이내	22% 이내	33% 이내	25% 이내	12% 이내
군	·	6% 이내	26% 이내	31% 이내	25% 이내	12% 이내
자치구	1% 이내	7% 이내	15% 이내	30% 이내	31% 이내	16% 이내

비고 :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지역보건법과 한방진료실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 [별표 2]”에 한의사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와 군, 보건 의료원이 설치된 군에 공중보건의로서 한 사람씩만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이 시, 구, 특별시에 한방진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수 없이 계약직이나 일용직, 혹은 상용직이나 비전임계약직으로 한의사를 임용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한의사가 보건소에 필수 요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주민의 건강관리 차원에서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고령 인구의 퇴행성 질환 치료에 있어서 한방 의료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의료법시행규칙에 방문간호 등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을 규정<sup>34)</sup>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요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보건소에 한의사가 필수 배치 인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드시 한의사를 필수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한의사와 보건소장

한의사가 계약직이나 일용직, 또는 상용직 등

으로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 승진은 있을 수 없으며, 더군다나 보건소의 최고직책인 보건소장으로는 절대로 임용될 수 없다. 이것은 아주 특이한 경우로, 의사 이외의 다른 보건직근로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것<sup>35)</sup>과 비교해 보면 법적용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논한 대로 지역보건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보건소에 한의사의 근무가 필수적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Ⅲ. 고 찰

국가를 비롯한 모든 단체는 먼저 제도를 정비한 후 사업을 시작하며, 국가내의 모든 단체는 언제나 국가 제도에 진입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제도적 보호를 받으려고 한다. 국가 제도는 한 국가 내에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체도 그 업무의 실행을 법적으로 보장받지도 못하며, 보호를 받을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의 제도적 보장이야말로 모든 단체 및 개인의 정당성에 대한 약속이며 Leviathan과 같은 국가 권력의 일부에 편입되어 더욱 막강한 실행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개인도 국가의 제도에 진입하면 무한한 국가

34)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가정간호)

-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가정간호의 범위는 간호, 검체의 채취(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현장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운반,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의 교육 및 훈련, 상담, 건강관리에 관한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과의 의뢰로 한다. (2000.10.21. 신설)
- ②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간호사는 제5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가정전문간호사이어야 한다. (2000.10.21. 신설)
- ③ 가정간호는 의사 또는 한의사가 의료기관 외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가정전문간호사에게 치료 또는 관리를 의뢰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00.10.21. 신설)
- ④ 가정전문간호사는 가정간호 중 검체의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적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 및 한의사의 처방의 유효기간은 처방일부터 90일까지로 한다. (2000.10.22. 신설)
- ⑤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전문간호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2000.10.21. 신설)
- ⑥ 가정간호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가정간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000.10.21. 신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가정간호의 질관리 등 가정간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10.21. 신설)

35) 보건복지통계연보 43호, 최광, 보건복지부, 경기도, 1997.

보건복지통계연보 46호, 최선정, 보건복지부, 경기도, 1999.

권력을 등에 업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권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데 하물며 단체에 있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제도권으로의 진입은 언제나 필연적으로 기성 보수세력의 배타적 행동이 따르게 되며 이를 타파하기 위해 무한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일제시대 이후의 한의계의 역사가 바로 그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같은 수학기간, 같은 복지부의 면허, 같은 의료법상의 역할 등등에도 불구하고 한방공중보건의제도, 한방군의관제도를 실시하는데 수십 년이나 걸렸다.

그러한 많은 문제점 가운데 본 보고자는 보건소에 근무한 것을 계기로 보건소 근무 한의사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법, 제도적으로 매우 불합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책으로 임용 받지 못하고 계약직이나 비전임계약직, 일용직, 업무대행, 상용직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으로 임용 받지 못하면 승진도 할 수 없고, 지역보건에 정책결정을 내리며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총괄적 지휘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에도 임용될 수 없다. 이는 의무직 이외에 다른 직책을 가진 간호직이나 보건직 공무원도 보건소장이 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거기에는 매우 복잡한 법, 제도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거기에

는 크게 두 가지의 법령이 관계한다.

그 하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인데, 同 시행령에 한의사를 보건소의 필수 배치인원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며, 따라서 한방진료실 등 한의사의 업무가 필요한 어떠한 제도도 보건소에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한의학이 노인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그리고 내상 질환 등에 탁월한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보면 지역보건에 이바지할 근거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지역보건에 기여할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 성인병 이환율의 증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증가 등 현대적 삶에서 한의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갈 것이지만, 웬지 제도권에서는 그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의 한 단면이 바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낮은 지위이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인데, 同 규칙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인원이 비율로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비율의 한도 내에서만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새로 사무관의 직위를 신설한 다든지, 혹은 일반직 공무원을 임의로 임용한 다든지 할 수가 없는 것이며, 따라서 한의사에게 사무관의 직위를 부여하면 다른 직렬의 사무관이 그 직위에서 해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보건소 人力現況 - 1999年 : 1985~1999]

(단위 : 명)

구분 년도	계	보건소장		의 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 사
		의무직	보건직	관리의사	공중보건의		관리의사	공중보건의	
1985	7 617	107	106	175	149	-	14	384	113
1990	10 150	109	144	265	452	-	35	144	159
1991	10 478	112	155	247	454	-	38	98	169
1992	10 745	113	156	278	442	-	50	99	160
1993	11 026	107	153	283	400	-	49	102	157
1994	11 016	110	127	284	366	-	54	97	171
1995	12 132	111	134	326	376	-	55	98	194
1996	11 804	110	133	322	275	-	51	113	216
1997	11 599	112		261	283	17	62	131	232
1998	11,512	133		193	323	41	56	130	231
1999	10,892	120		150	354	106	49	157	226

것이다. 이 규칙 또한 한의사에게 아주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보건소에 한의사가 근무하게 된 역사가 짧아서, 이미 다른 직렬의 공무원들은 모두 “정원”상의 직위를 인정받은 후이므로 한의사에게 새로이 사무관의 직위를 배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한의사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공무원 임용및시험시행규칙”의 규정상 양의사와 더불어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에 속한다.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는 5급 지방의무사무관 이상으로만 임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의무 직류인 한의사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에는 적어도 “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정원명부”상 한의사를 “보건주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법령과 규칙에 위배되는 사항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에서도 제11조에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위의 어떠한 법령도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담을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배되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 시행도 합리화 될 수 없다. 따라서 동류의 직업 가운데 어느 한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제도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행동이나 제도 역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는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는 계약직 “가”급으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는 계약직 “나”급으로 임용되도록 하고 있는데, 한방 전문의 제도는 2000년에야 비로소 시작하여 2004년에야 비로소 한방전문의를 배출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1998년 10월 10일 최종 개정된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완전히 양의사 위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62.7%가 “(양의사와 한의사는) 같은 의사이므로 같은 직급을 주고 전문의는 전문의 수당을 주면 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2001년 5월 30일 현재 전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한의사 가운데 전문의 자격으로 계약직 “가”급에 임용된 근무자는 한 사람도 없다.

무하는 계약직 한의사 가운데 전문의 자격으로 계약직 “가”급에 임용된 근무자는 한 사람도 없다.

지금까지 보건소 근무 한의사의 법, 제도적 지위에 관하여 논하였는 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제도가 한 단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향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역할이나 의료인의 보건소 인력 배치에 관계되는 “지역보건법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 규정된 일반직공무원의 직급에 대한 인원 비율 문제 역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 IV. 결 론

이 논문에서 보고자하는 한의사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역할을 현행법률 위주로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는 전국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논문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국의 243개 보건소 가운데 한의사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곳은 56개소였다(공중보건의 제외).
2. 한의사는 공무원분류상 양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무” 직렬의 “일반의무” 직류에 속하였다.
3. 헌법, 의료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시행령, 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모든 법령에 의사와 한의사는 평등한 관계에 있고 동등한 지위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지방공무원임용령에 한의사는 최하 “의무사무관”의 직급으로 임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5. 전국의 보건소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대부분 정규 의무사무관의 직위를 받지 못하고

- 대부분 계약직이나 일용직, 상용직, 비전임 계약직 등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6. “공무원정현원명부”의 “정원”상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사 직위가 “보건 주사(6급)”으로 규정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부상 한의사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한의사를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상 “사무관 7% 이내 임용 규정” 때문인데, 한의사를 의무사무관으로 임용하지 않는 것은 최상 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8.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사를 정규직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 한의사를 보건소 배치의 필수 인원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실제로 한의사는 진료 뿐 아니라, 재활의학, 가정간호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9. 보건소의 다양한 업무 가운데 현실적으로 주어진 한의사의 업무는 진료행위 한 가지로 한정되어 있었다.
  10. 실태조사 결과, 보건소의 한방진료실에 대한 예산 지원이나 한의사에게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 등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지 않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크게 달랐다.
  11.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의 가장 큰 개선 요구사항은 정당한 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이었다.
  12.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진료 이외의 업무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고령, 독거노인의 방문진료”였다.

### 參考文獻

1. 憲法. 第11條 [國民의 平等, 特殊階級制度 否認, 榮典의 效力].
2. 國家公務員法. 第2條 (公務員의 區分), 第35條 (平等의 原則).
3. 地方公務員法. 第2條 (公務員의 區分), 第33條 (平等의 原則).
4. 地方契約職公務員規定施行規則. [規則 第413號, 最終改定 1999. 1. 20].
5. 地方公務員定現員名簿. 地方自治團體 總務課 備置.
6. 地方公務員任用令. [大統領令第17115號 一部改定 2001. 01. 29.], [別表1] 1級 乃至 9級公務員職級表(第2條 第4號 및 第3條 第1項 關聯).
7.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關한 規定施行規則. [別表1] 事業所 및 出張所의 長等의 職級基準.
8. 地方契約職公務員規定. 第6條 (採用期間) [大統領令第15912號 一部改定 1998. 10. 10.], [別表0].
9. 地方公務員評定規則. [別表 3] 一般職公務員의 加點對象資格證區分表 (99.7.3. 改正).
10. 行政自治部所管非常對備資源管理法施行規則. (1999. 3. 27. 改正).
11. 公務員任用 및 試驗施行規則. [別表 4] 研究職 및 指導職公務員 特別採用을 爲한 資格證區分 및 轉職 試驗이 免除되는 資格證區分表(99.3.27. 改正), [別表 3] 採用試驗·轉職試驗의 應試에 必要한 資格證區分表 (99.3.27.改正).
12.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構와 定員基準等에 關한 規定 施行規則. [別表 5] 地方自治團體의 地方公務員의 職級別定員策定基準 (97.2.4. 改正).
13. 醫療法. 第2條 (醫療人), 第5條 (醫師·齒科醫師 및 韓醫師의 免許), 第9條 (國家試驗), 第11條 (免許의 條件 및 登錄), 第24條 (變死體의 申告), 第55條 (專門醫).
14. 醫療法施行規則. 第22條 (家庭看護), [別紙 第7號 書式] 死亡診斷書(屍體檢案書)(2000.10.21. 改正).
15. 傳染病豫防法. 第6條 (傳染病患者 等의 變更申告).
16. 傳染病豫防法施行規則. 第2條의 4 (第1群



- 傳染病患者 等の 退院·死亡 等の 申告), 第1條의4 (醫師 等の 傳染病 發生申告).
17. 地域保健法施行令. 第11條 (保健所長) [大統領令第16526號 一部改定 1999. 08. 07.], [別表2] 專門人力 等の 免許 또는 資格의 種別에 따른 最小配置基準.
  18. 障礙人福祉法施行規則. [別表 4] 障礙人福祉施設의 設置·運營基準(99.12.31. 改正).
  19. 嬰幼兒保育法施行規則. [別表 3] 保育施設從事者의 數와 資格基準 (98.9.4. 改正).
  20. 食品衛生法. 第67條 [食中毒에 關한 調査報告].
  21. 兵役法. 第34條 [公衆保健醫師 等の 編入], 第58條 (醫務·法務·軍從將校 等の 兵籍編入).
  22. 兵役法施行令. 第153條의 5 (補償審議委員會).
  23. 老人福祉法施行規則. [別表 5] 老人醫療福祉施設의 運營基準 (99.8.25. 改正).
  24. 國民健康保險療養給與의 基準에 關한規則. [別表 1] 療養給與의 適用基準 및 方法.
  25. 高等教育法施行令. 第25條 (受業年限).
  26. 1999年 特別判例. 事件番號 : 98두11007 事件日字 : 1999.9.21.
  27. 최광. 保健福祉統計年譜·保健所人力現況 1985-1996. 保健福祉部, 京畿道. 1997 ; 43
  28. 최선정. 保健福祉統計年譜 1997-1999. 保健所人力現況. 保健福祉部, 京畿道. 1999 ; 46.
  29. 權寧星. 憲法學原論. 서울 : 法文社. 2001.
  30. 編輯部. 小法典. 서울 : 玄巖社. 2001.
  31. 이기남 外. 豫防醫學과 保健學. 癸丑文化社. 서울. 1996.
  32. 公共機關內 韓方診療室 設置모델集. 大韓韓醫師協會. 2001.
  33. 2000年度 診療實積(市報告資料). 各自治團體所屬 保健所行政室 作成.
  34. 大韓豫防韓醫學會. 大韓豫防韓醫學會誌. 2000; 60.

구분		장의 직급	차장	부장	과장 또는 과장급 담당관	계장
서울특별시	본부	1급 또는 2급	3급	4급	5급	6급
	기타사업소	3급 내지 5급		4급	5급	6급
광역시, 도	본부	2급 내지 3급		4급	5급	6급
	기타 사업소	4급 내지 6급			5급	6급
시, 군 자치구	인구 15만 이상	4급 내지 6급			5급	6급
	인구 15만 미만	5급 또는 6급				6급